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비판보도(2020.9.3.)

## ‘유료’ 학원 입시설명회, 학원법 위반에 코로나發 교육격차 악화에 대한 불안감까지 고조시켜...

- ▲ 일부 사설학원에서 1인당 20만원을 받는 등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설명회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내고 학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큼.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학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 기타경비(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원은 설명회에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서울시교육청도 현행법상 학원 설명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음.
- ▲ 학원 설명회는 통상 입시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수강생 모객 및 학원상품 소개를 위한 영업·판촉 성격의 홍보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또한 학원설명회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 비용을 받는 것도 무리가 있음.
- ▲ 따라서 유료 학원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에 입시설명회 참석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임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해당 학원설명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을 시행해야 함.
- ▲ 아울러 학원의 관리·감독권자가 관할 교육감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유권해석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원설명회 관련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방침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입시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강사를 활용한 공공 입시설명회 강화하여야 함.

사설학원은 학교 시험이나 입시 일정에 맞춰 입시설명회를 자주 개최합니다. 학부모·학생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이지만, 기존 수강생을 유지하고 신규 수강생을 모객하며 학원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영업·판촉 성격의 홍보행사이기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서는 설명회를 통상 무료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원들이 1인당 최고 20만원을 받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며 유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라며 소수만 유료로 진행하는 ‘프리미엄’ 설명회라거나, △재원생이나 재원생 학부모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학생들에게 입시정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설명회’가 아닌 ‘특강’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1] 유료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학원 사례

♣ 고3 수시지원전략 프리미엄 [이과] 설명회 ♣ <8/28> 19:00

일시: 2020-08-28 19:00 | 장소: 학원 대치캠퍼스 입시센터 | 대상: 고3 | 접수기간: 2020-08-14 00:00 ~ 2020-08-27 17:00 | 조회수: 129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설명회 일정을 1주일 연기합니다.**

**♣ 고3 수시지원전략 프리미엄 [이과] 설명회 ♣**

안녕하세요. 학원 대표입니다.  
고3 수시지원전략 프리미엄 [유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님이 가장 혼란스러울 시기, 수시와 정시에 대한 프리미엄 지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수시지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설명회날 인사드리겠습니다. - 출림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소수인원만 "유료"로 진행합니다.★**

**▶ 설명회 일정**  
일시: 8월 28일  
[이과] <19:00>  
비용: 각 200,000원  
※ 설명회의 개별별 내용은 동일합니다.  
※ 결제 방법: 학원 내방 또는 1566-2005 전화 결제  
※ 예약 후 48시간 이내 미결제 시 예약이 취소됩니다.  
장소: 대치캠퍼스 입시센터  
[오시는 길] http://

**▶ 프리미엄 설명회 내용**  
1. 서·연·고 및 in서를 주요 대학 수시 출원율과 실질경쟁률을 통한 합격 가능성 공개  
2. 실질경쟁률을 통한 상위 70%컷과 하위 30% 컷의 차이 공개  
3. 의·치·한·수의대 학종/교과 내신 합격권 어떻게 달라지나?  
4. 2년간 재학생 10만명 감소에 따른 학종/교과 내신 합격권 어떻게 달라지나?  
5. 수시지원 틈새 전략이란 무엇인가?

**▶ 연사**  
대표

**★ 설명회 예약 ★**  
**아래의 하단 신청 버튼**  
**※ 본 설명회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학원] 예비고1,2 학생들을 위한 유료입시특강**

2020. 2. 6. 17:17

예비고1,2 학생들을 위한 유료입시특강

★잔여석이 많지 않습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놓치지 마세요.★★

입시 성공의 힘은 '새로운 정보의 UPDATE와 그 실행'에 있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새로운 생기부 기재요령을 전격분석해 드립니다.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입시의 주체인 학생본인의 '입시전형바로알기'가 이뤄져야, 알맞은 입시전략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입시전형을 찾는 수업인 <학생의 참석이 필수인 입시특강>!!!

▣ 신청 전 참고사항 ▣

1) 학부모님 한 분에 한해서 동반참석 가능  
2) 2회 모두 필수 참석, 수강료 **2회 총 100,000원 (교재비는 무료)**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원설명회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내고 학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부채질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유료 설명회가 현재에는 학원가 밀집지역의 일부 사례로 확인되기는 하나, 한번 유료설명회를 해본 학원에서는 이후 여러 차례의 유료설명회를 반복해서 개최하고 있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상 학원이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 기타경비(모의고사·재료·피복·급식·기숙사·차량비)’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원이 교습비 이외의 부가 비용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것으로, 현행법상 학원은 설명회에 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현행법상 학원설명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학원 사업자로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 보고, ‘학원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법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한 징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학원을 대상으로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과태료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2] ‘유료 학원설명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유권해석(2020.8.31.)

가. 교육부의 해석에 따르면 「학원법」에 따른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성적 등,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학교 입학 전형 등의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로 진학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나. 그러나 입시설명회는 학생 개인별 진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입시전형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 다만, 학원에서는 「학원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입시설명회를 유료로 진행한 경우 학원 사업자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징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통해 파악 및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학원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 학원에서 입시설명회 참석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임을 안내할 예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中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교습비등)** (...)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것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것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학원 설명회는 통상 학원의 영업·판촉을 위한 홍보성 행사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참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또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 불특정인을 대상의 대략적인 정보전달 수준에 그치는 ‘설명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해석과 같이, 학원이 설명회를 ‘진학상담·지도’와 같은 별도의 교습과정으로 정식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했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강’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학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 학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입시설명회나 다름없는 입시특강에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좌시된다면 얼마든지 학원의 편법적 징수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당국이 이를 일부의 사례로 치부하고 적절한 조처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유료 학원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재발되며 학원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번에 유료 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에 입시설명회 참석비용을 징수하는 행위가 학원법 위반임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안내하고, △유료설명회를 개최한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의 관리·감독권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유권해석에 대한 안내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할 교육청으로서 △학원설명회 관련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방침을 비롯하여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사교육으로 인한 입시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강사를 활용한 공공 입시설명회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 유료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는 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일부 사교육 시장의 유료 입시설명회를 통한 편·불법적 비용 징수로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9.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